

# 법인등기<sup>1)</sup>에 있어 ‘열람청구권’에 관한 실무상의 제 문제 - 사례를 중심으로

박준의 | 법원 서기관 · 전 상업등기소 등기관

## 사례

어느 회사의 대표이사 아닌 이사<sup>2)</sup>가 등기소(과)에 출석하여 당해 회사법인의 설립 당시의 첨부서면 가운데 정관을 열람·등사 신청하였다. 부속서류의 보존기간은 5년인 바, 아직 회사설립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아 등기소에서 해당 서류를 보관하고 있었다. 참고로 열람신청을 하는 이사의 진술에 의하면, 대표이사가 정관을 공개하지 않아 주주들과 모종의 다툼이 있다고 한다. 등기관은 이 신청을 수리해야 할까?

는 바에 따라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법 10조 1항). 열람청구권의 문제는 10조 1항 후문의 ‘이해관계 있는 부분’의 해석 문제가 된다.

이는 실무에서 빈번히 문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어느 회사의 이사나 감사라고 주장하는 민원인이 등기소를 방문하여 “나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나를 해임하는 등기가 되어 있는 것을 오늘 확인하였다. 회사에서 나에게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것이 말이 되느냐? 그 내용을 보아야겠다”라는 항의를 받는 경우와 같다.

## 1. 문제의 제기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

- 1) 법인등기를 상업등기와 대칭시켜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용어례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개념의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개념의 외연을 반영하지 못한 용어례가 아닐 수 없다. 초심자는 상업등기를 비법인등기로 오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상업등기가 개인상인과 회사법인을 포함한 ‘상인에 관한 등기’라고 한다면 민법법인이나 기타 특별법에 의한 법인에 관한 등기는 ‘일반법인등기’라고 합쳐서 부르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상업등기-일반법인등기 용어사용례)
- 2) 최근 상법 일부개정(제9362호 2009.01.30 일부개정)에 따라 주식회사의 이사 등기방법이 변경되어 2009. 2. 4.부터 시행되고 있다(대한민국 사법부 코트넷 최근 업무마당 2009. 2. 3.자 계시 윤광근 사무관, 「상법개정에 따른 이사 등기방법 등 안내」참조). 최근의 중요한 변화이므로 참고로 소개해 둔다. 개정상법 제317조 제2항 제8호는 다음과 같다. 8.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감사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러므로 법에 따른 때 종래 ‘이사’로만 등기하던 것을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 구분해 등기해야 하고 이를 받아서 대법원 공탁상업등기과는 개정상법 시행일인 2009. 2. 4.부터는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변경등기시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하여 등기하고 ‘이사’라고만 등기할 수 없도록 전국 각 등기소에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따라서 신청서에 첨부된 주주총회의사록 등에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로 구분해 선임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는 명확히 의사록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이는 등기신청서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개정상법 시행 전에 이사를 선임하였으나, 등기신청을 개정상법 시행 후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경우는 물론 열람을 청구할 이해관계가 명백한 예이지만, 실무에서 그 범위와 한계의 설정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다.

## 2. 열람의 절차·방식

등기사항증명서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법 10조 1항). 열람청구권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을 증명해야 함은 물론이다(규 27조).

열람신청서에는 “1. 열람을 청구하는 등기기록 또는 그 부속서류 2. 폐쇄한 등기기록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뜻을 기재” 해야 하는 바(규 29조 1항), 부속서류의 열람신청서에는 이해관계를 명백히 하는 사유를 기재하거나 이를 기재한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2항).

등기기록의 열람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사항을 전자적 방법에 의해 그 내용을 보게 하거나 그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법에 의하는데,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소 담당직원이 보는 앞에서 해야 한다. 다만, 부속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일반 등기기록의 열람방법과 같다(규 30조 1,2항).

등기기록 또는 전자문서로 작성된 부속서류의 열람은 관할 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서도 할 수 있으므로(규 27조 3항), 향후 전자신청률이 대폭 상승된다면 등기소 창고에서 직원들이 기록을 찾는 번거로움이 상당히 줄어들 것은 물론, 예컨대 전자신청으로 제주도 소재 관할등기소에서 교합 처리한 신청사건의 등기신청서 및 그 부속서류(첨부서면)를 서울 상업등기소에서 열람청구인이 열람가능한 시대가 올 것이다. 다만 신청인이 과연 ‘이해관계를 가진’ 열람청구권자인지의 여부가 중요한 문제다.

## 3. 열람 이외에 복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에 대해 일본 법무성 실무에서는 열람 및 사진촬영

만 허용하고, 신청서와 그 첨부서면에 대한 복사는 재판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촉탁이 없는 한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예규에 근거하여 실무에서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는 부분에 한해 열람의 연장으로서 복사청구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그 비용은 열람을 신청한 이해관계인이 부담해야 한다.

###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한 열람방식

(제정 1989. 3. 8 등기예규 제680호)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관하여는 법령의 근거가 없으므로, 그 등(초)본이나 인증된 사본을 교부할 수는 없으나, 이해관계 있는 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열람 또는 사진촬영은 허용하여도 무방하며 열람의 연장으로서 등기공무원의 인증이 없는 단순한 사본을 교부할 수도 있다. (89.3.8. 등기 제458호 각 지방법원장 대 법원행정처장 통첩)

## 4. 이해관계 있는 열람청구권자

당해 주주총회 결의에서 해임된 이사회 감사는 자신이 해임된 내용이 기록된 주주총회의사록을 열람할 이해관계가 당연히 인정된다.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원고는 당해 소장의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과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당해 회사가 종전에 경료한 등기에 대해 그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열람할 이해관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통상 이러한 경우 즉,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는 원고가 재판부에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이 있는 후 법원의 등기소에 대한 촉탁으로 신청서와 부속서류(첨부서면)에 대한 복사와 송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①단순히 회사의 대표이사과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며 열람을 요구하는 이사라든가, ②대표이사 아닌 이사가 당해 회사 설립 당시의 부속서류 중 정관에 대해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③이미 회사에 사임서를 제

출한 종전 대표이사, ④주식이 이중양도되었다고 주장하며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 ⑤최대주주로서 형사고소를 준비중인 자 ⑥당해 회사를 피고로 해 주주총회 결의 하지를 다투는 소를 준비중인 자가 등기소(과)에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은 문제다. 부동산등기와 관련한 선례이지만 열람신청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다.

〈선례〉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 신청

1. 부동산등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위 서류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하여 위 법률에 의한 정보공개 대상이 아니다.

2. 당사자의 경정등기 신청에 의하여 경정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신청서도 위 열람의 대상이 되는 등기부의 부속서류에 포함되며,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은 본인이 위 열람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본인의 위임장(법정대리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소명하는 호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위 신청서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나, 단순히 어느 부동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004. 10. 12. 부등 3402-518 질의회답)

이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일본의 실무에 대한 답변을 소개한다. 일본 법무성 동경지방법무국 민사행정부 제1법인등기담당 사이또코이치(齊藤孝一) 수석등기관은 열람등사청구권자의 범위에 대해 "일본 법무성의 선례는 없으며, 해당 등기관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sup>3)</sup>

3) 제10회 한일등기관등상호연수 일본세션(2008.10.14.~10.23.) 동경지방법무국 방문시(10.15.) 한국측 상업등기분야 담당인 저자의 질의에 대한 齊藤孝一 수석등기관의 답변.

생각건대 현재의 대표이사가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와 당해 결의와 관련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는 열람의 이해관계가 당연히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업등기소 실무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미 회사에 사임서를 제출한 종전 대표이사는 비록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미 사임이 효력을 발생하였기 때문에 등기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열람할 이해관계가 없다고 생각된다. 또한, 단순히 주식이 이중양도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진정한 주주라고 주장하는 자가 부속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

그리고 회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기 위해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열람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 열람을 무제한 허용한다면 회사를 상대로 제소할 의사도 없이 영업비밀이나 회사에 대한 조사를 위해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실제 소 제기를 하지 않는 자들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때에는 회사의 영업비밀, 기타 권리의 보호를 위해 등기관은 신중을 기해야 하므로, 소 제기 후 수소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해결할 것을 권유해야 할 것이다. 제소 전에 열람하지 않아도 제소 후 충분히 청구원인을 이유 있게 하는 사실을 주장,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열람허가의 보충성).

상업등기규칙도 제21조를 두어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에 대한 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에 등기관은 대법원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서류를 송부하고(1항), 이 서류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출력한 후 인증하여 송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송부하도록 규정하여(2항) 간접적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 산하 지방법무국들과 지국, 각 출장소의 실무도 같은 태도이다. 다만, 최대주주가 자신이 최대주주임을 소명하면서 "본건 등기는 주주명부를 위조하여 등기 신청한 것이며 허위의 등기다. 당해 등기신청인들을 상대로 형사고소 하겠다"와 같은 사례는 그 진정성

을 살펴 등기관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할 것이므로, 위 규칙 21조와 같은 조문을 별도로 두지 않은 규칙의 태도 및 수사구조론, 수사의 신속성과 밀행성에 비추어 본다면 제소 준비를 위한 경우와는 다소 완화하여 달리 판단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열람을 신청하는 이사가 신청서에 첨부된 부속서류 중 주주총회 의사록의 기재에 의하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 그 이사가 “당일 주주총회에서 등기사항으로 의결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결된 것으로 기재가 된 것 같으며, 이를 근거로 등기가 된 것이다”와 같은 사유를 제시하며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주주총회 의사록은 당해 회사가 본점에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굳이 이를 등기소에서 열람할 이유가 없다(열람허가의 보충성).

등기내용을 다투려고 하는 경우에는 소 제기 후 송부 촉탁의 방법을 이용해 서증으로 제출하거나,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을 이용해야 할 것이다.

### 사례의 해결

사례는 코트넷(법원내부전산망) ‘묻고 답하기’ 란의 2008년 상반기 상업등기 분야 질문 중 하나를 사례화한 것이다.

누구든지 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과 이를 증명하는 서면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지만,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회사의 이익과 개인 사생활(privacy)권 등의 보호를 위해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하여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

로 법이 정해 놓고 있다(법 10조 1항 참조).

생각컨대 법 10조 1항의 ‘이해관계’의 범위에 대해 이를 이론상 획일적으로 해결 짓기는 어렵다. 본문에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사례에서 평이사는 대표이사가 아니므로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부속서류에 대한 열람의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다. 대표이사에 대한 형사고소 등을 준비하는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또한, 단순히 소 제기의 준비단계인 경우라면 인정하기 어렵다. 정관을 공개하지 않는 대표이사는 과태료의 책임<sup>4)</sup> 외에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해임, 주주총회에서 이사직 해임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결론적으로 평이사는 그가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 비상무이사, 어느 것이든 대표이사가 공개 거부한 정관을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는 없다. 이에 대한 답변 중 채택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등기신청서의 부속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이란 등기부 또는 신청서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등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 예컨대, 이사직을 해임 당한 이사가 해임시의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사록을 열람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단순히 회사의 이사라는 사정만으로는 특히, 회사의 대표이사 와 분쟁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등기신청서의 열람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이사(대표이사)는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사채원부·주주명부·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 396조, 448조), 이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상 635조 21호). 따라서 이 경우에 이사는 회사에서 관련서류의 열람을 하면 되므로, 이사가 등기신청의 이해관계인이라는 소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열람의 대상이 아니다.” **법무**

4) 회사의 정관·주주총회의 의사록·사채원부·주주명부·재무제표를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와 회사채권자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위의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 396조, 448조), 이를 비치하지 않으면 과태료에 처해진다(상 635조 21호).

5) 2008. 4. 15.자 법원공무원교육원 권오복 교수님 (답변위원)